

제437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29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천준호 위원·전용기 위원 서면동의)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1)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천준호 위원·전용기 위원 서면동의) 2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12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12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1) 12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12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한병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기결정의 건과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장종태 위원님이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비롯하여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미화 위원님, 안 나오셨지요?

다음에 천하람 위원님, 나오셨나요?

천하람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만에 다시 운영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위낙 훌륭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위원회인 만큼 같이 토론할 때 토론하고 또 협력하고 협치할 때는 협치하면서 좋은 운영위원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태 위원 대전 서구갑 출신 국회의원 장종태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많이 배우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천준호 위원·전용기 위원 서면동의)

(10시08분)

○위원장 한병도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천준호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제437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7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야가 어렵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7일 운영위를 열어서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 다 막론하고 모범적인 상임위 또 협치, 민생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고 협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생법안입니까? 위원장님께서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주장하시면서 민생 처리 법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22대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법안만 320건으로 21대 전반기 63건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40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헌적인 그런 법안들, 국민 입틀막법, 법왜곡죄 등을 줄속으로 처리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땀질식 입법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깐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통법부로 전략한 것 아니냐,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폭주를 하는 동안 노인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법 또 교권침해를 막는 교육공무원법 같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주요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단 28%밖에 지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줄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겁니다. 2012년 당시 개정을 보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심의해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패스트트랙보다 평균 법안 심의 기간이 짧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들 자체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법을 경시하고 있는지를……

○위원장 한병도 1분 더 드리세요.

○김승수 위원 이 발언들 자체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그런 단편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법안 통과 건수는 20대 국회 기준 우리나라는 9138건, 무려 1만 건에 가까운 반면에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에 불과합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친목모임, 계모임의 그런 규정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첫 소위부터 이렇게 다수당의 폭거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운영위에서조차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또……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임미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지금 김승수 위원님의 발언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법안 처리다라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정상적인 문제 제기라면 저는 그것을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 중에 민주당 위원들이 이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여 줬던 그런 면에 대해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법안 처리다라고 폄하하시는 것은, 이 회의장에서 나

오지 말아야 할 발언을 간사님께서 그렇게 서슴없이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과 발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박충권 위원입니다.

한병도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을 향해서 상임위로 복귀하라고 그렇게 호소하셨는데 이러려고 부르셨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단 1%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러기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이 보완수사권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보완수사권 얘기를 왜 여기에서 합니까?

○박충권 위원 보완수사권, 개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의제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박충권 위원 지금 맞는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뭐가 맞습니까?

○박충권 위원 발언하고 있잖아요.

보완수사권, 개판들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패스트트랙이 뭐니까? 상임위원장 우리한테 18개 중에 7개를 왜 줬습니까?

○임미애 위원 이건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떻게 민주당 위원들의 법안 처리 과정을 개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행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박충권 위원 왜 줬습니까? 이렇게 패스트트랙까지 330일짜리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 없애 버리려고 하는 거 이거 일당 독재 국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 상임위까지도 그 악법들 통과시키려고 이 패스트트랙을 개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왜 상임위원장을 줬습니까, 7개? 허수아비 주는 겁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18개 다 하십시오. 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지금 이렇게 악법들 통과시키는 데 공범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들러리 세우려고 부른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위 왜 들어오라고 불렀습니까?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법들, 정책들을 마련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민생에 도움이 안 되는 독재 국회 만드는 그런 패스트트랙이나 고치고 최소한의 숙의가 필요한, 최소한 330일이라는 그 정도의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90일로 줄이겠다? 그리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까지 줄이겠다?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 하십시오, 그냥. 일당 독재 국회 다 하십시오, 그냥.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도 잠시만요.

○임미애 위원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죄송합니다. 먼저 천준호 위원님 말씀 듣고 교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민전 위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임미애 위원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일단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전체적인 상황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5월 말에,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의 법정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두 달여가 경과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원내 여야가 같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토론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함께 원구성을 해야 한다고 기다렸는데 무려 그사이에 두 달여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는 계속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고 일하는 국회 하려면 계속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남용에 대해서 좀 제재하고 그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패스트트랙법을 효용성을 높여서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운영위가 구성이 되었고 운영개선소위가 열렸습니다. 당연히 그 법이 우선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저께 운영개선소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계는 지금 반도체·AI 전쟁으로 이르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반도체 공장을 3년 만에 완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을 하고 속도감 있게 국회가 움직여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행 패스트트랙법은, 일반법이 평균 31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패스트트랙법은 330일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그 법을 필요에 맞게끔 효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심사 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일치하고 모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교환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견 분포가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가 남용되고 있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에도 필버를 거는 그런,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하지 않고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만큼 운영개선소위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될 수도 없지만 또 야당이 반대하는 의견이 존중되어서 안 되는 법안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김민전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안건은 임시 회기결정의 건인데 위원님들이 뜨거우셔서 다음 건을 가지고 미리 토론을 앞당겨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토론하실 게 다음 건이잖아요? 회기결정의 건은 미리 처리를 하

고 다음 토론으로 이어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김민전 위원님 말씀 듣고 임미애 위원님 그다음에 이쪽 갔다가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니면서, 다음에 김성희 위원님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만 더 의견 들겠습니다.

먼저 김민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민전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개딸이라는 표현에 화를 내시는 것에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개딸이라는 표현이 개혁의 딸이라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핵심 지지자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핵심 지지기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오히려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핵심 지지 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법안을 지나치게 빨리 전당대회의 일정에 맞춰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드린 것인데 그것을 왜 불편해하실까 하는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다음 안전이라고 말씀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하는 국회이지 법안을 많이 만드는 게 일하는 국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4년에 1만 건에 가까운 법이 바뀐다, 그 하나의 법이 바뀔 때마다 무수한 시행령이 바뀐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 바뀌는 법들을 다 어떻게 알고 지킬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 지금 지나치게 많은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킬 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고요.

특히 일하는 국회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특히 2024년 이후 국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법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유지되어 왔던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정말 어떻게 법치주의가 가능할까를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법들이 주로 통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국회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저는 참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패스트트랙을 더 빨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빨리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한편에 있어서는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의회정치는 그래도 진보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더더욱이나 그 진화되어 오던 한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다음 임미애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이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문금주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태규 위원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왜 안 됩니까, 그게?

○문금주 위원 의회민주주의를 누가 무너뜨렸는데요?

○임미애 위원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임미애 위원 제가 발언권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아까 제가 할 때 방해하지 마셨어야지요.

○임미애 위원 논지를 벗어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안 심사 시작 전부터 민주당 위원들의 심사에 임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보여 주기 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김승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의 법안을 둘러싸고서 논의 진행되는 것이 보여 주기 위한 발언입니까? 보여 주기 위한 처리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상정되고 난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이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민주당 위원들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다뤄질 문제고요. 심사 전에 저희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한 발언은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잖아요. 논의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하신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용근 위원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들으시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왜……

○김한규 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

○임미애 위원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병도 제가 토론은 양쪽 균등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윤용근 위원 아니, 지금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김한규 위원 발언권 얻고 하시라고요. 국회는 그런 거예요.

○위원장 한병도 위원님, 양쪽 의견을 제가 똑같이 아주 균등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박충권 위원 가르치듯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한규 위원 배우세요.

○박충권 위원 선배라고 그렇게 선배인 척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아주 처음부터, 제가 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저런 이죽거림이 정말 싫은 겁니다.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죽거리……

○박정현 위원 누가 지금 이죽거립니까?

○**김태규 위원** 방금 이죽거렸지 않습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뭐가 이죽거렸어요?

○**김태규 위원** 빈정대거나 이죽거리거나……

○**김한규 위원** 발언권 얻고 하라는 게 문제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김태규 위원** 태도 아닙니까, 태도? 어제 소위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한규 위원** 어제 위원님은 법사위에서 책상 두들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오자마자?

○**서미화 위원** 예의를 갖추고 합시다. 예의 갖추고 하시지요, 얘기하실 때.

○**위원장 한병도** 제가 양쪽에 균등하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동등하게 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의사진행 형태든 어떤 형태든 발언시간을 받으시면 그것은 위원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좀 끝나시고, 발언 끝나면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도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그러면 잠시만요.

먼저 김미애 위원님 차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저도 몹시 일하고 싶어서 국회에 왔고 보이지 않는 데,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참 무척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가 과연 국가와 국민께 이익 되는 일을 하는지 저는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정치가 4류라는 비판, 국개의원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았지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 참석했고 어제 아침 10시에 소위에 참석해서 법안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오늘 전체회의에서 심사하는 이 법이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인가, 과연 민생 입법인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인가, 그것을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이렇게 330일 이상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고 서로 갈등을 조율할 수 있고 그런 법이라면 그렇게 안 되겠지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우리 국민들도 이해관계가 많이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고 결국은 이 제도가 도입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는 330일 이상인데 그동안에 우리 국회가 얼마나 좋아져서, 이것이 90일로 단축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여깁니다. 다수당이 다수당의 폭거로 일관한 게 어제오늘의 일입니까? 그로 인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태워진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의 노란봉투법 하나만 봐도 그렇지요. 기업이, 일류 기업이 4류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호황기에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조가 ‘성과급을 배분해 달라’, 그다음에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면서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발목이 잡히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건설업계, 많은 산업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스피 9000을 넘기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입법취지를 생각해서 제대로 좀 심사하자는 겁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위원장 한병도 그다음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말씀 듣고요 그다음에 윤용근 위원님 말씀 듣고 회의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제가 윤용근 위원님까지만……

○전용기 위원 의사진행발언 중에 개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또 문제 제기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이랑 윤 어게인 얘기도 자주 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핵심 지지층들이니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아니,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 만들어 가지고 탱크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지금 여기 와서 논의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 얘기할 거면 윤석열 뽑은 거 잘못했다 사죄부터 하시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규 위원 보세요. 지금 말씀도 어디 동네 애 이름 부르듯이 윤석열이 반란이 어떠니……

(「당연히 반란이지」 하는 위원 있음)

(「헌재 결론이 반란인데!」 하는 위원 있음)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반란 얘기는 안 했고요.

○김태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 복수심 얘기하고 개딸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발끈하시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발끈하게 되시지요!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서미화 위원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 내란 하기 전에는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전용기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탱크로 국회를 짓밟으려고 했는데, 윤석열이라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혼자서 하세요, 혼자서들!

(장내 소란)

(일부 위원 퇴장)

(「아직도 내란범을 옹호하냐고!」 하는 위원 있음)

○서미화 위원 국힘당은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 안 불이잖아! 이재명, 이재명 하잖아! 제대로 하세요, 진짜.

○전용기 위원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재명이라고 이름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했다고 그것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자고 했더니 330일 걸리는데, 일반 법안 통과시키는 데 310일 걸린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에 한 30여 건은 아직도 필리버스터 걸어 놔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걸고 뭐 합니까? 집에 갑니다. 몇몇 당번

세워 놓고 다 집에 가 놓고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더욱 큰 문제는 신중 발목 잡기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상원의 상원이 생겼어요. 국회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 가지고 나서 본인들이 체계·자구 심사한다고 다른 타위법 가지고 와 가지고 발목 잡아 놓고 결국 그 법들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목 잡지 말자, 체계·자구 심사권 없애자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또 지도부가 ‘그 부분 문제 있어요’라고 하면서 필리버스터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민생법안이 30건 이상 필리버스터가 걸려 있는 겁니다.

꼼수에 꼼수가 난립하기 시작했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꼼수라고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지도부가 상원 노릇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100명이 넘는 의원들 뭐 합니까, 상원이 다시 생겼는데. 그런 것 바로잡으라고 지금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법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일하는 국회 완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김성희 위원님, 말씀……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아쉽긴 한데요.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문건에도 잘 나와 있지만 신속처리대상법안 지정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수정 가결됐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 위원회 단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의 대표적인 법안인 심상정 의원께서 제출하셨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경우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열 차례 이상 논의를 하고 회의록에 남아서, 법안을 빨리 논의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 외에 지금 방금 반도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것 소위에서 지금 25년 4월에 논의한 이후로는 한 번도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안을 올려놓고 올려놓은 기간 동안 심사를 하자라는 의사를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참사진상 규명법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던 것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아예 논의를 안 했고요,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이 발의했던 경우에도 보면 소위원회 논의가 한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에 반대하는 정당이, 그 위원장을 갖고 있는 정당이 해당 소위원회에서 빠르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놔는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 나가셨지만 이분들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걸 논의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는 치고 계시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된 법안들을 다 보면 해당 소위에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실체가 그냥 시간을 질질 끌 뿐이지 주어진 시간 동안 심사를 하면 된다. 90일로

줄이고 60일로 줄이면 그 기간 동안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그거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끝나고 나면 이걸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필리버스터 걸고, 그냥 시간을 끄는 것 외에는 진지한 논의가 하나도 없는 이런 방식의 국회의 운영 제도는 이제 개선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말씀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현입니다.

토론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 버리는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도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놓으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몇 날 며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법안이 심사 보류되고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외국의 기업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디지털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자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1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를 찾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1년 안에, 2년 안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법과 제도가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법안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회의 발목 잡기 그리고 계속해서 트집 잡기로 인해서 법안심사소위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제도의 기간 단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이름 그대로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이름과 현실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법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최대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자동부의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30일은 거의 1년입니다. 1년이 걸리는 제도를 과연 신속 처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입법 마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오히려 국회의 입법 마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전제로 정치적 대치는 더 이어지고 민생법안은 그사이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속처리 제도가 존재 이유를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들이 발목이 잡혀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만 시대의 속도, 우리 사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한 심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중함과 지연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하되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국회의 역할은 갈등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회가 오래 싸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은 내려야 합니다. 정치는 속도만으로 평가받지는 않지만 필요한 결정을 제때 내리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도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국회(임사회) 회기결정의 건은 천준호·전용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5)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90)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1)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39분)

○위원장 한병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천준호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천준호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천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7월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박홍근 의원, 김남근 의원,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안건의 장기간 계류 방지라는 안전신속처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 기한을 각각 위원회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본회의는 60일에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도 천준호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그래도 안건에 좀 정확한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안전에 반대의견입니다. 우선 빠른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입법입니다. 게다가 우리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제도에 대한, 게임의 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변경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변경마저도 이렇게 좀 너무 지나치게 급작스럽게 처리하는 것 저는 안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들께서 19대·20대·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평균 심사 기간이 300일 정도였는데 패스트트랙이 오히려 더 늦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합의로 무탈하게 통과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무드하게 통과된 법안에 비해서 패스트트랙 제도가 더 빠르게 통과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말 그대로 여야가 정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인데 이 패스트트랙 제도마저도 더 빠르게 패스트를 넘어서 패스티스트(fastest) 제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소수당이, 아니면 소수당의 상임위원장이 이런 법안의 입법취지에 대부분 반대하거나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이던 시절에 지금도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국회라고 하는 곳이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 다수가 숫자로 밀어붙이는 곳이 국회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께서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였고 또 소수당의 심사, 소수당에서 주장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우려나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들을 민주당의 여러 유력 정치인들께서 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정말 국회가 반대의견을 충분히 숙고하면서 논의해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틀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정말 많은 법안들을 빠르게 빠르게 처리해 왔는데요 그게 과연 부작용 없이 진행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부분 굉장히 논란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심지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하고 계시는 정성호 장관께서도 ‘이거 태풍이 부는데 우산으로 어떻게 막겠냐. 그런데 나중에 또 고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보완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선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이 패스트트랙 제도마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숫자도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많은 분들께서 통과된 법안의 평균 심사 기간이 300일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60일·30일 이렇게 해 가지고 90일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들, 일반적인 법안들보다 여야의 이견이 있어서 이례적인 절차를 택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합의 처리되는 법안보다 훨씬 빠르게 3분의 1도 걸리

지 않는 시간만을 주고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일부 손보더라도 일반적인 법안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지 합의 처리되는 법안의 심사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확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견 드립니다.

○위원장 한병도 천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 위원님.

○김윤 위원 천하람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가 다수결로만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과거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어떻게 심의되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패스트트랙에 들어간 법안이 그 이전에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기간에도 제대로 잘 논의가 안 되다가 막판에 본회의 직전에 대안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실질적인 숙의가 보장되느냐 숙의를 하려고 노력하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는 90일이라는 기간이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숙의를 하기에 불충분한 기간이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외국의 사례나 과거의 사례와 다른 점은 지금 우리가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고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에 33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논의를 하는 게 과연 국회가 적절하게 일을 하는가, 적절한 속도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의 답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숙의를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간이 단축되면 그 기간 내에 여야가 숙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촉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안건들에 대하여 국회법 제58조제5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천하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천하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하람 위원 저 반대의견으로 표결 기록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병도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들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석 위원(27인)

김기웅 김미애 김민진 김성희 김승수 김 윤 김준형 김태규 김한규 문금주
박균택 박정현 박충권 서미화 안도걸 윤용근 윤종오 이정현 이주희 임미애
장종태 전용기 정점식 천준호 천하람 최은석 한병도

○청가 위원(1인)

최수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입법심의관 이동훈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선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2026. 7. 27.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청원심사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2026. 7. 27.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장종태		2026. 7. 28.	
국회운영개선	박균택	박정현		국민의힘	2026. 7. 28.
예산결산	박정현	박균택			
국회운영개선	김태규	김민전			
청원심사	김민전	김태규			

○소위원회 직접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4.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47)

7월 1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보고서 제출

2026년도 국회소관 세출예산 이·전용 내역 제출(2분기)

(2026. 7. 28. 국회사무총장 제출)